

## 제233회 서구의회 임시회

서구의회는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33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열어 5분 자유발언, 조례안 심의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 의원발의 조례제·개정

### 대표발의자 조영순 의원



조영순 의원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 어린이들이 지방자치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는 기회를 통하여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어린이 모의의회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건립하는 조형물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심의사항과 건립 후 조형물 관리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대표발의자 김진출 의원



김진출 의원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대표발의자 이주한 의원



이주한 의원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장위촉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명예반장 제도를 폐지하여 행정여건의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 대표발의자 오세광 의원



오세광 의원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에서 인용되는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명과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5분 자유발언



차경영 의원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개발정책을 제안하며**  
서구의회 차금영 의원은 제23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와룡산 개발계획에 따른 그린벨트 지역 훼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어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무분별한 개발을 자제하고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시대에 푸른 숲 가꾸기를 우선시하여 맑은 공기를 마실 주민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 수렴과정 등 집행기관의 심사숙고를 당부했다.

##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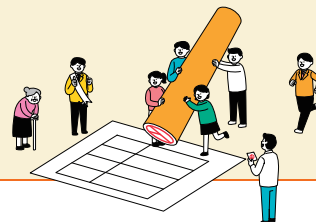


서구의회는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2021 회계연도 서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내역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를 했다.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 여근순 의원 등 4명으로 구성되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결산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지식을 겸비하여 예산의 과오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검사했다. 결산검사 결과는 제237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제8회

# 전국동시지방선거

## 투표 안내



### 선거일

6. 1.(수)

### 선거권자

18세 이상(2004. 6. 2. 이전 출생자) 투표권 있는 사람

### 투표일

㉠ **사전투표** : 5. 27.(금) ~ 5. 28.(토) \* 투표시간 추후 확정

㉡ 장소 : 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 **선거일투표** : 6. 1.(수) \* 투표시간 추후 확정

㉡ 장소 : 지정된 투표소

각 가정에 발송되는 투표안내문 또는 5월 중순 이후 투표소 찾기([www.nec.go.kr](http://www.nec.go.kr)) 확인  
※ 5. 11.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 준비물

**신분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 주의하세요

- 선거인은 선거별로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됩니다.
- 투표할 때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www.nec.go.kr](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